

원격훈련 본인인증 관련 훈련기관 관리 철저 요청

(24. 5. 16. 훈련품질관리국 원격훈련관리부)

최근 원격훈련 본인인증 관련하여 부정 운영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부적정 운영사례를 알려드리니 훈련이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적정 운영사례	조치방안
휴대폰 본인인증 대신 훈련기관 자체 인증으로 같음	훈련기관 자체 인증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인증 대행사를 통한 휴대폰, 아이핀, 범용 공동인증서 방식을 반드시 적용
단체가입 회원에 대해 본인인증 미수행	단체가입 회원이 LMS에 최초 로그인 시 반드시 휴대폰 본인인증 수행하도록 안내 ※ 회원가입 본인인증은 모바일 OTP로 대체 불가
휴대폰(아이핀, 범용 공동인증서 포함) 본인 인증 값을 임의 조작하여 전송 예: 인증 일련번호를 1111로 전송	인증 대행사를 통해 받는 인증 결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송 ※ 인증 결과값은 인증 대행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전송규격은 인증 대행사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훈련생이 타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OTP를 등록하여 이용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훈련생은 아이핀, 범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수행하도록 안내 ※ 모바일 OTP 사용 불가
동일 기기로 다수 훈련생에 대해 모바일 OTP를 등록하여 본인인증 수행 및 대리 수강 진행	모바일 OTP 부정 사용 및 대리 수강하지 않도록 훈련생 등에 안내 ※ 적발 시 부정훈련으로 지도·점검 연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외의 교육(산업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에 공단 모바일 OTP 이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공단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기타 훈련의 본인인증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함 ※ 모바일 OTP 사용 불가

원격훈련 관련 부정·부실 운영(예: 모바일 OTP 부정 사용을 통한 대리수강 등)이 지속 확인되는 경우 향후 고용관서 지도·점검 등 연계할 수 있으니 각 훈련기관에서는 자체 개선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